

상속예금(지급·명의변경)의뢰 및 이자소득 귀속동의서



담당자	책임자

다음의 예금주 _____의 사망으로 인하여 본인들이 상속(포괄유증) 받았사오니 이를 지급 명의변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①공동신청인 등은 상속권자(포괄 수유자 포함)전원이 틀림없으며, 권리자의 증감변동이 없을 것으로 담보한다.
- ②신청인 각자의 권리자분의 분할여부는 공동신청인의 내부문제로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며, 귀 저축은행에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한다.
- ③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·유언등 상속과 관련한 다른 법률관계는 없으며, 만약 이러한 사항이 추후 발견되더라도 공동상속인이 공동으로 해결하기로 한다.
- ④상속개시일(사망일)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일 전일까지의 이자소득은 피상속인(예금주)의 소득으로 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은 주된 상속인의 소득으로 귀속시키는 데 동의하고, 향후 상속인간의 소득정산 및 종합소득세신고 등은 각 상속인 책임하에 처리하며, 추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.
- ⑤위 각 항에 대하여 신청인 등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, 만일 이 신청으로 인하여 저축은행에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신청인 등이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한다.

❶ 상속재산

예금종류	계좌번호	금액	만기일	비고

❷ 소득귀속자(주된상속인)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명(인)

❸ 공동상속인(상속인 전원의 표시)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명(인)

❹ 포괄수유자(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함)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명(인)

❺ 보증인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명(인)

20 년 월 일

주) 1. 의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

- 피상속인(사망한 예금주)의 가족관계증명서등
(피상속인의 사망이 기재된 것)
- 상속인 및 제직자가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그의 가족관계증명서등

-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

- 유증의 경우에는 유언에 관한 증서와 법원의 유언서 검인조서등본

- 2. 보증인은 피상속자의 근친자를 세워주십시오

- 3.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주십시오